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고 카시트의 재유통 방지〉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8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8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사고 카시트의 재유통 방지(안 제29조제4항 신설)	2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89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3.
3. 회 부 일 : 2026.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중고거래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중고거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고 카시트의 재유통 방지(안 제29조제4항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 카시트의 판매 또는 장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카시트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호용 장구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유아 보호용 장구(이하 “카시트”라 함)는 체격이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유아를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품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1)에 따른 ‘구조·장치’나 ‘부품·장치·보호장구’(참고 참조)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카시트 관련 안전 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3)에 따라 카시트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해당하고, 제17조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제1항4)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5)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⁶⁾가 부과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⁷⁾는 유아

2. 어린이 놀이기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4. 어린이용 비비탄총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카시트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의 현행 법령 체계는 카시트의 제작·수입 단계에서의 안전기준과 사용 의무만을 규율하고 있어, 교통사고 후 카시트의 성능 저하를 점검하고 결함 카시트의 재유통(중고 시장 유통)을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⁸⁾.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에 대한 판매·장착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⁹⁾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카시트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유아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12세 이하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명(0.5%)이며, 부상자 수는 11,319명(4.1%)으로 나타났다¹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에서는 자동차 중고부품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제2호),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음.

9)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에서는 최저 연령대를 12세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고,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에서 12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8%임(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판(2024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25.9).

<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유아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¹¹⁾ 6세 미만의 교통사고 환자 중 카시트를 미착용한 경우 외상성 머리손상¹²⁾ 위험이 2.1배 높았고, 사망을 비롯한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증상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2.2배 높았음.

이처럼 카시트는 유아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장치인데,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성이 저하되고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¹³⁾, 외관상 문제가 없으면 결함 없는 카시트로 중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음.

11) 질병관리본부,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카시트 착용하세요!」, 보도자료, 2016.12.13.

12) 외상성 머리손상은 교통사고, 추락 등 외부의 힘에 의한 충격이 머리에 가해져서 뇌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

13) 신문기사, 「“아이 안전 위협할 수도”...중고로 사면 안 되는 유아용품 세 가지」, 서울신문, 2025. 11. 06일자

따라서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첫째, 카시트는 교통사고 등의 경미한 충격에도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내부 미세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의 현행 법령 체계는 카시트의 제조·수입 단계에서의 안전인증만을 규율하고 있어 중고거래 등의 재유통 단계에 대해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교통사고 차량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사고 차량에서 분리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되는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사업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으로 결함이 있는 카시트(이하 “사고 카시트”라 함)의 판매 및 장착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음.

반면, 다음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사고 카시트를 판매하거나 장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동차 정비 및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카시트 내부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카시트의 결함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세 균열 등 내부 손상도 포함되므로, 전문적인 검사 장비와 기술 없이는 결함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중고거래 등의 주요 판매 경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셋째, 신제품 카시트의 안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고제품에 해당하는 사고 카시트 관련 기준 마련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부처가 각각 신제품과 중고제품 규제를 담당하는 구조로서, 부처 간 혼선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넷째,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직접적인 판매 등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판매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유아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 카시트의 재유통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고 카시트 결함 판단에 대한 사업자의 전문성, 규제 대상의 한계, 부처 간 업무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내용을 법체계적 정합성과 규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카시트의 안전관리를 규율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카시트는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장치나 부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부적절하고,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카시트 결함 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카시트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함.

2)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다양한 제품, 사용상태가 상이한 형태로 존재하는 중고 카시트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중고 카시트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상태를 확인 후 구매·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정 업종(정비업, 해체재활용업)에만 별도의 법적 의무(판매금지, 장착금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카시트 제조업체나 최종 사용주체가 아닌데도 안전성 판단 의무와 유통 책임까지 부과받는 것은 책임주체와 규제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7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 창담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